

제 1 과 목 : 경 제 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 ②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민사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④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 ⑤ 종업원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소비자 피해구제를 통한 사업자 보호 ②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방지
- ③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④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 ⑤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 ① 이사 ② 대표이사 ③ 유한책임사원
- ④ 감사 ⑤ 지배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적용의 대상이 된다.
- ② 대법원은 흑연전극봉을 제조·판매하는 외국사업자들의 국외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 ③ 역외적용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외적용을 한 사례가 있다.
- ④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이면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산업합리화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된다.
- ②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③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무효이다.
- ④ 2 이상의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그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⑤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 ③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④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 ⑤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 ②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③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 ④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
- ⑤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연구·기술개발 ② 소비자 후생 증대 ③ 산업구조의 조정
④ 거래조건의 합리화 ⑤ 불황의 극복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 ②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는 거래거절에 해당한다.
- ③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는 행위는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
- ④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거래강제에 해당한다.
- ⑤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는 차별적 취급에 해당한다.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시정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가격의 인하 ②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③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④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 ⑤ 계약조항의 삭제

15.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어느 행위유형에 해당하는가?

- ① 거래조건차별 ② 부당고가매입 ③ 이익제공강요
④ 부당한 자금지원 ⑤ 거래상대방의 제한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②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③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 ④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⑤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에 관하여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된다.
 - ② 최고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 ③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된다.
 - ④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⑤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구입강제	ㄴ. 기술의 부당이용
ㄷ.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ㄹ. 거래처 이전 방해
ㅁ. 끼워팔기	

-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경쟁규약을 정하여 방지하고자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 ① 부당한 인력지원 ② 판매목표강제 ③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④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⑤ 부당한 거래단계의 추가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유형은?
- ① 재판매가격유지행위 ② 부당한 공동행위
 - ③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④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⑤ 부당한 지원행위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립 및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②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③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④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⑤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형사소추가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① 배타조건부거래 ② 사원판매
③ 구입강제 ④ 부당고가매입
⑤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 ②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겸임할 수 없다.
- ④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 및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기피신청이 접수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의사는 적용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인 사업자에 포함된다.
-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정한 법 적용제외 조합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조합이 소규모의 사업자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④ 특허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도 적용된다.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결을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범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서면신고가 원칙이다.
 - ② 직권인지 또는 신고에 의해 조사를 한 경우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는 영업비밀이 노출되거나 매출감소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나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범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의 제공에 불과하다.
3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약관은 반드시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 ③ 약관의 용어풀이란도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한다.
 - ④ 일부조항이 개별적인 교섭을 거쳤을 경우,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 ⑤ 법규명령은 약관이 아니다.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① 한국소비자원
- ②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고객의 대리인
- ③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고객
- ④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업자
- ⑤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단체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내용이다.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가)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나)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다)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목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르)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① 가. 부당하게 나. 상당한 이유 없이
 다. 상당한 이유 없이 르. 상당한 이유 없이
- ② 가. 상당한 이유 없이 나. 부당하게
 다. 부당하게 르. 부당하게
- ③ 가. 부당하게 나. 부당하게
 다. 부당하게 르. 상당한 이유 없이
- ④ 가. 상당한 이유 없이 나. 상당한 이유 없이
 다. 부당하게 르. 상당한 이유 없이
- ⑤ 가. 부당하게 나. 부당하게
 다. 상당한 이유 없이 르. 부당하게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규제의 편입통제에 해당하는 규정은?

-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④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 ⑤ 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 ② 약관 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
- ③ 손해배상액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포함된다.
- ④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곧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는 없다.
- ⑤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되면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된다.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권한이 있다.
- ②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 ④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절차개시의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경우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없다.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약정의 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 ② 약관의 특정조항이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 ③ 약관 조항 중 일부 조항이 개별 교섭되었더라도 개별 교섭되지 아니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④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상대방이 약관작성자에게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무효인 약관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된다.
- ⑤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하고 고객이 그에 동의하였다면 그 다른 설명은 개별약정이 된다.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에서 불공정약관조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 ①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 ②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③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 ④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⑤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와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약관거래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다.
 - ②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 약관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④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적용된다.
 - 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은 임의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포함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약관 조항을 어떠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명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내용에 개입할 수 있다.
 - ③ 사업자단체는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가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면서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의 약관내용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 ②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 ③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
 - ④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에서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안내문과 청약서를 우편으로 송부한 경우
 - ⑤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